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국 가 공 무 원 총 정 원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 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·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1만5,293명에서 32만2,46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9. 1. . ~ 1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31만5,293명”을 “32만2,463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총정원)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(이하 “총정원”이라 한다)는 <u>31만5,293명</u> 으로 한다.	제2조(총정원) ①----- ----- ----- <u>32만2,463명</u>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1